#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2428

2021년 6월 18일 교 육 위 원 회

## Ⅰ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5월 25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
2. 회부일자 : 2021년 5월 31일

## 3. 상정일자

○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(2021년 6월 18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승복 기획조정실장)

## 1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23조,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계획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 전관리체계 확립
- 상위법령 위반(위임범위 일탈, 불일치 포함)소지, 자치법규 입안기준

위반 사항 등을 정비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기를 3년에서 매년으로 수정(안 제8조)
- 나.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계획을 조례에 반영(안 제9조)
- 학교장이 수립하는 교육안전 이행계획 ⇒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으로 수정
- 교육장 및 직속기관 장이 수립하는 교육안전 이행계획 ⇒ 교육안전 시 행계획으로 수정

#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 호 제2428호로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과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,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과의 수립주기 등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## 2. 주요 검토의견

## 가.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○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'3년마다'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

있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'매년'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하고, 별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삭제하는 등 교육안전 관련 계획 수립 체계를 재구축하려는 것입니다.

- 2019년 법제처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자치법규 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후,¹) 동 조례의 계획수립 체계 등이 상위법인 「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과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교육안전 관련 계획 수립 체계와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였는바,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라 하겠는바(행정관리담당관-5102, 2019. 4. 17), 조례 개정에 별도의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이 지나 도록 동 조례의 개정이 지연되었는바, 이는 입법행정에 대한 교육청 의 안이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서울특별교육청은 자치법규의 제·개정 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기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#### 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- 1) 교육안전 관련 계획 수립(안 제8조, 제9조)
- 동 개정조례안 제8조 및 제9조는 현행 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'3년'에서 '매년으로 변경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삭제하며 각급학교와 직속기관 등에서 수립하는 이행계획을 학교계획 또는 교육안전 시행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해서 현행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과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교육안전계획의 수립체계를 살펴보면,

<sup>1)</sup> 법제처 보도자료, 법제처 89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지원, 2019. 1. 29.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22조 및 제23조는<sup>2)</sup> 국무총리와 중 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렇게 확정·통보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'교육감'이라 함)과 같은 '재난관리책임기관'의 경우에는 동 집행계획에 따라 교육안전과 관련된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세부집행계획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서 동 조례에서 규정한 종합계획은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부집행계획이라 하겠습니다.

○ 또한 교육안전과 관련된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의 계획 수립체계 역시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3년의 기본계획과 교 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.

<sup>2)</sup> 제22조(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
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, 제24조의 시·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은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.

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<sup>1.</sup> 재난에 관한 대책

<sup>2.</sup> 생활안전, 교통안전, 산업안전, 시설안전, 범죄안전, 식품안전,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

제23조(집행계획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·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[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법령체계]

#### [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]

제4조(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- 2.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
- 3.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
- 4. 삭제 <2019. 12. 3.>
- 5.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(이하 "지역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(이하 "학교계획"이라 한다)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-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⑧ 그 밖에 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[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제4조(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**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**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・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(이하 "지역계획"이라 한다)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
- 2.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
- 3.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) ① 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(이하 "학교계획"이라 한다)을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(유치원의 경우에는 「유아교육법」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)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

- 월 **말일까지 수립**하여야 한다.
-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
- 2.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
- 3.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따라서 이러한 상위법령 체계를 종합하면, 동 개정조례안 제8조와 제9조의 종합계획은 법령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또는 지역계획이라 할 것인바, 현행 '3년'의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상위법령과 같이 '매년'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합치되는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.

그리고 동 개정조례안이 현행 제9조제1항과 제2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삭제하는 것은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종합계획이 매년 수립됨에 따른 조치로, 현행 조례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상위법령에 따른 행정계획의 체계성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한 행정계획의 난립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또한 안 제9조제1항이 '이행계획'을 '학교계획'으로 변경하는 것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2) 교육안전위원회의 자문사항과 위원회 구성(안 제15조)
- 동 개정조례안 제15조제1항제5호는 교육안전위원회의 자문 등의 사항 과 관련해서 현재 '교육감,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 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'을, '교육감이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'으로 변경하려는 것 입니다.

이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지원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, 법제처는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"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조례로 규정

한 사항과 설치 주체인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, 위원 장 또는 위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과의 관계에서 충돌할 소지가 있다"고 하면서 "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"의 부분을 삭제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는 바,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」제33조의<sup>3)</sup> 학생인권위원회나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」제6조의<sup>4)</sup> 성평 등위원회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」제7조의<sup>5)</sup> 학교협동조합민관협의회 등도 동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의 의견에 따를 경우 후속 개정이 필요할

- 1.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
- 2.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
- 3.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
- 4.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
- 5.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, 정책, 교육활동 및 그 밖의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
- 6.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
- 7.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·조사 보고서의 발간
- 8.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
- 9.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

#### 10. 그 밖에 교육감,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

-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4) 제6조(성평등위원회)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  - 1.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- 2. 성차별·성폭력 방지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
  - 3.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
#### 4.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

- 5) 제7조(협의회의 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  - 1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- 2.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
  - 3.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
#### 4.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<sup>3)</sup> 제33조(학생인권위원회)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 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,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것으로 생각됩니다.

○ 다음으로 안 제15조제3항제7호는 현재 교육안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과 관련해서 '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'을 '그 밖에 교육감이 <u>교육안전과 관련하여</u>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'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

현행 규정이 위원의 자격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안전과 관련해서 일정한 자격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'교육안전과 관련하여'라는 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은 교육감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등을 제시하기 위합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.

- 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- V. 토론요지 : 없음.
- Ⅵ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- ₩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- ₩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- IX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3년마다"를 "매년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,

-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 중 "시행계획"을 "종합계획"으로, "이행계획을 수립하고"를 "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수립하고"로, "이행계획을 보고"를 "보고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4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②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자체 혐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2조제2항 중 "제9조제3항 및 제4항"을 "제9조제1항 및 제2항"으로, "이행계획"을 "계획"으로 한다.
-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"필요하다고"를 "교육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"로 한다.
  - 5.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 (이하 '종합계획'이라 한다)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②・③(생 략)  제9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	제8조(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) ①
② 제1항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23조제3항의 세부집행계획 중 교육안전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.	② 〈삭 제〉
③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생·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,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교육감에게 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.	①
④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, 자체 협의를 거쳐교육감에게 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한다.	②교육안전 종합계획을 기초로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자체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<u>보고</u> 하여야 한다.
제12조(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) ①(생략)	제12조(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) ①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	②
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	제9조제1항
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계획에	및 제2항의 계획
포함시키고 점검하여야 한다.	
제15조(교육안전위원회) ① 교육감은	제15조(교육안전위원회) ①
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	
및 권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	
교육안전위원회(이하 "교육안전위원회"라	
한다)를 둔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그밖에 교육감,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5. <u>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과 관련</u> <u>하여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이</u>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교육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	③
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	
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	
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그 밖에 교육감이 <u>필요하다고</u> 인정	7.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과 관련

<u>하여 필요하다고</u> 인정하는 사람

④ ~ ⑩ (현행과 같음)

하는 사람

④ ~ ⑩ (생 략)